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
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“분원”이라는 명칭을 “광역거점형 치유센터”로 변경하고,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「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·지정 기준(안 제3조)

“분원” 명칭을 “광역거점형 치유센터”로 변경

나.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(안 제5조2)

트라우마치유센터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에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품의 별도 계정 설정 관리 등 규정

다.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·운영·위탁 기준(별표 1)

“분원” 명칭을 “광역거점형 치유센터”로 변경하고, 설치·지정·위탁기준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9. 29. ~ 11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분원”을 “광역거점형 치유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분원”을 “광역거점형 치유센터”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 2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 ① 트라우마치유센터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기부자”라 한다)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기부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한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품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③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

한다.

- ④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,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·운영·위탁 기준(제3조 관련)

1. 공통기준

- 가. 설치·지정 기준은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1개소마다 적용할 것
- 나. 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

2. 시설·설비기준

- 가. 사무실: 책상,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
- 나. 상담실: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,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
- 다. 프로그램실: 원예, 미술 등 치유 관련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을 갖추고, 프로그램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출 것
- 라. 신체치유실: 이용자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,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 구조를 갖출 것
- 마. 그 밖에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기실(휴게공간),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

3. 인력기준

- 가.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장은 1명으로 할 것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치유전문인력을 7명 이상 둘 것
 - 1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
 - 2) 「간호법」 제2조제1호의 간호사
 - 3)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의 물리치료사
 - 4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
 - 5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임상심리사(1급·2급)
 - 6)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담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

다.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인력을 3명 이상 둘 것

4. 운영기준

가. 운영시간: 주 5일,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

나.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것

- 1)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운영방침
- 2) 직원의 업무분장
- 3)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이용자의 대응요령
- 4)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이용수칙
- 5) 그 밖에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

5. 설치·지정·위탁기준

가. 과거사 사건 관련 사건별 치유 대상자 규모

나. 이용 편의성

- 1) 대중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
- 2) 치유 관련 기관(병원, 재활기관 등)과 연계성이 높은 곳

다.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

- 1) 사건 유형에 따른 자조모임 등 사회적지지 체계 구축
- 2) 피해자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활동 포함
- 3) 가족상담, 증언 치유 등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활동 지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<u>분원</u> 의 설치·지정 기준) 국 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(이하 “치유센터”라 한다)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<u>분원</u> 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·지 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3조(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 치·지정 기준) ----- ----- ---- <u>및 제2항</u> ----- ----- <u>광역</u> <u>거점형 치유센터는</u> ----- -----. <u>제5조의 2(기부금품의 접수절차</u> <u>등) ① 트라우마치유센터는 법</u> <u>제18조제2항에 따라 현금이나</u> <u>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·법</u> <u>인 또는 단체(이하 “기부자”라</u> <u>한다)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</u> <u>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되거나</u> <u>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</u> <u>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</u> <u>다.</u> <u>②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기부자</u> <u>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부</u> <u>한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(이하</u> <u>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에 대해</u> <u>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</u> <u>부금품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</u> <u>야 한다. 다만, 기부자가 지정한</u>

현행	개정안
	<u>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</u> ③ <u>트라우마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</u> ④ <u>트라우마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,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260